

대구예술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규정

(개정 2009.06.17. 법인이사회)
(개정 2010.08.13. 법인이사회)
(개정 2011.01.13. 법인이사회)
(개정 2011.04.27. 법인이사회)
(개정 2012.02.09. 법인이사회)
(개정 2012.08.08. 법인이사회)
(개정 2013.02.06. 법인이사회)
(개정 2019.06.20. 교무위원회/자구수정)
(개정 2019.11.28. 학교법인)
(개정 2021.02.01. 법인이사회)
(개정 2025.02.04. 법인이사회)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하 '전임교원'이라 한다) 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강의전담 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개정 2021.02.01.)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이란 임용자와 피임용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직급과 임용기간, 급여, 기타근무조건 등을 정하여 임용함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200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 중 2021년3월1일 부터 신규 임용되는 전임교원은 [별지 제1-1호] 제7조의 1 (재계약조건 및 절차)를 적용한다.(개정 2021.02.01.)

제4조 (임용절차와 임용권자) ① 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 제1항 중 전임교원 재계약(재임용)에 관한 사항은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9.11.28.)

제5조 (임용계약) ① 계약임용은 계약 당사자간에 개별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임용은 서면으로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명기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임용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 비정년트랙 강의전담 전임교원임용계약서(별지 제1-1서식) 및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연봉계약서(별지 제2호 서식), 비정년트랙 강의전담 전임교원연봉계약서(별지 2-1호 서식)로 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21.02.01.)

1. 소속
2. 직급
3. 계약기간
4. 급여
5. 교수시간
6. 업적 및 성과
7. 재계약조건 및 절차
8. 기타사항

제6조 (계약기간) 1년 단위로 한다.(개정 2009.6.17)

제7조 (교수시간)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대구예술대학교 전임교원 강의담당규정”에 의하며 필요시 총장은 강의담당 책임시간이외 초과강의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 (급여) ① 우리 대학교 예산범위안에서 임용자와 피임용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2012.02.09)

② 폐전공 또는 모집중지 되고 신입생 총원률 및 전학년 재적생이 편제정원의 50% 미만인 전공(단, 모집정원이 20명 미만인 전공의 경우 신입생 인원이 10명에 미달 또는 재적생이 40명 미만)의 교원은 전년도 연봉의 7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11.1.13)

③ 당해학기 책임시수 기준의 50%에 미달되는 교원 또는 폐전공 또는 모집중지 되고 재학인원이 20명 미만 또는 소속 전공이 없는 교원은 전년도 연봉의 4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11.1.13)

※ 폐전공 또는 모집중지 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주어진 전공 교원의 경우에도 ②③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폐전공 또는 모집중지 된 당해연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재계약 조건) ① 계약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의 업적이 영역별 평점기준(별지 제1호 또는 제1-1호)을 충족하여야 하고, 교원복무평정표(별지 제3호 또는 제3-1호) 및 소속 전공 교원들의 의견서(별지 제4호 또는 제4-1호)를 참작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야 한다.(개정 2012.02.09.)(개정 2019.11.28.)(개정 2021.02.01.)

② 비정년트랙 강의전담 전임교원 중 계약기간동안의 심사평점(평정)이 우수한 경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계약 할 수 있다.(개정 2021.02.01.)

제10조 (재계약 절차) ① 전임교원은 계약기간 만료일 4개월 전에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8.13)

② 총장은 전임교원의 계약기간동안의 연구실적물, 재계약 심사 평정표, 교원업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교 총장이 재계약(재임용)한다.(개정 2019.11.28.)

③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되지 못한 경우 당연 퇴직된다.

제11조 (정년트랙 전환 임용) 임용 후 2년 이상 된 자 중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할 경우, 예산과 전공의 균형을 고려하여‘대구예술대학교 교원임용규정’의 정년트랙전임교원(계약제전임교원)으로 전환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2.02.09.)(개정 2025.02.04.)

① 소속 전공이 있을 경우

② 신입생모집 학과(전공)의 경우(개정 2012.2.09.)(개정 2025.02.04.)

③ 교수업적평가결과가 최근2년 연속 전체교원 중 하위 20%에 속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12.02.09)(개정 2025.02.04.)

④ 담당과목 강의평가결과가 2년 평균 7점(10점기준) 이상인 경우(개정2012.02.09)

⑤ 경고이상의 징계가 최근2년 연속 없을 경우

⑥ 교원복무사항에 결격사유가 없고 총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⑦‘대구예술대학교 교원임용규정’에 의거 재임용 심의를 통과한 경우

제12조 (복무) 전임교원의 복무는 “대구예술대학교 교원복무규정”에 따르며 그 외 관련 법규 및 제규정에 따른다.(개정 2021.02.01.)

제13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에게 적용되는 제 반 법규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하며 개정 전 규정으로 임용된 교원을 포함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위 제1조(시행일) 개정 전에 임용된 자의 제9조(재계약조건)는 개정 전 정을 2년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2.04.)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따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개정 2012.8.8)

제1조 (소속) “을”은 _____ 전공 소속으로 한다. 다만, “갑”의 학제 개편등 기타 소속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직급) “을”의 직급은 _____ 교수 로 한다.

제3조 (계약기간) “을”의 계약기간은 _____년_____월_____일부터_____년_____월_____일까지 _____년간으로 한다.

제4조 (급여) ① “을”의 급여는 연봉계약서(별지 제2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보수 이외의 필요한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교수시간) “을”의 주당 강의 책임 시간 및 책임 강의 시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구예술대학교 전임교원강의담당규정 및 강사료 지급 규정을 따른다.

제6조 (업적 및 성과) “을”의 업적물은 전공분야에 관한 것으로 대구예술대학교 교원임용규정 및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재계약조건 및 절차) ① 계약기간 만료일 4개월전까지의 업적이 영역별 평점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교원복무평정표(별지제3호) 및 소속 전공 교원들의 의견서(별지제4호)를 참작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야 한다.

*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한 영역별 평점기준 (개정 2013.02.06.)

· 내국인

구분	평가기간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최초 재임용	3월~10월(8개월)	150	70	40
이후 재임용	11월~익년10월(12개월)	220	100	60

- 9월 임용자의 평가기간개월수, 평점 : 동일함

- 우리 대학교 임용(재임용기간포함)후 3년마다 교수업적평가규정 별표2,별표3의 필수항목을 택1하여 취득하여야 하며 미취득시 직위에 따른 평가대상기간의 총평점과 관계없이 재계약(재임용)하지 않는다.

· 외국인

구분	평가기간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최초 재임용	3월~10월(8개월)	150	-	-
이후 재임용	11월~익년10월(12개월)	220	-	-

- 9월 임용자의 평가기간개월수, 평점 : 동일함

② 전항에 의하여 "을"이 재계약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갑"은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기타 조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③ 재계약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 (기타사항)

제8조의 1 (의무) ‘갑“과 ”을“의 계약체결에 있어 ”을“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① 학교법인세기학원 정관 및 대구예술대학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8.8)

② 우리 대학교 이외의 보수를 수반하는 타 기관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③ 다른 학교에 출강하고자 할 때 또는 다른 기관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기 기관의 직을 위촉받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전공 분야와 관련 대구예술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교육자로서 자질 향상에 부단히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학과(전공)의 학생에 대하여 논문지도, 진로상담 등의 학생지도를 적극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8조의 2 (계약의 성실 이행) 본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상호 존중하여야 하며, “을”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계약을 위반할시에는 임용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① “을”의 교과지도내용이 불충실하여 대구예술대학교의 교육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② 결강, 조퇴, 결근 등이 무상하여 근무질서가 문란하였을 때

③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추락시켜 학교명예를 손상케 하였을 때

④ 학과(전공)의 폐지로 인하여 전공분야의 교과목이 없어진 때

⑤ 고의, 과실을 불문하여 학생들에게 면학분위기 저해 요인을 유발케 하였을 때

⑥ 직무상 또는 직무외에 학교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은 1개월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상호간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 3 (계약 변경 등)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을”의 동의를 얻어 체

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의 4 (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본인은 대구예술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계약서의 모든 조건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이 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본인은 대구예술대학교
교원으로서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 계약서와 대학의 제반 규정
에 명시된 근무지침에 따라 교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할 것을 서명.수락합니다.

년 월 일

“갑” 주 소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산 117-6 대구예술대학교
대 표 자

“을”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별지 제1-1호]

비정년트랙 강의전담 전임교원 임용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비정년트랙 강의전담 전임교원 임용에 따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개정 2012.8.8.)(개정 2021.3.1.)

제1조 (소속) “을”은 _____ 전공 소속으로 한다. 다만, “갑”의 학제 개편등 기타 소속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직급) “을”의 직급은 _____ 교수 로 한다.

제3조 (계약기간) “을”의 계약기간은 _____년_____월_____일부터_____년_____월_____일까지 _____년간으로 한다.

제4조 (급여) ① “을”의 급여는 연봉계약서(별지 제2-1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보수 이외의 필요한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교수시간) “을”의 주당 강의 책임 시간 및 책임 강의 시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구예술대학교 전임교원강의담당규정 및 강사로 지급 규정을 따른다.

제6조 (업적 및 성과) “을”의 업적물은 전공분야에 관한 것으로 대구예술대학교 교원임용규정 및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재계약조건 및 절차) ① 계약기간 만료일 4개월전까지의 업적이 영역별 평점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교원복무평정표(별지제3호) 및 소속 전공 교원들의 의견서(별지제4호)를 참작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야 한다.

*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한 영역별 평점기준 (개정 2013.02.06.)

· 내국인

구분	평가기간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최초 재임용	3월~10월(8개월)	150	70	40
이후 재임용	11월~익년10월(12개월)	220	100	60

- 9월 임용자의 평가기간개월수, 평점 : 동일함

- 우리 대학교 임용(재임용기간포함)후 3년마다 교수업적평가규정 별표2,별표3의 필수항목을 택1하여 취득하여야 하며 미취득시 직위에 따른 평가대상기간의 총평점과 관계없이 재계약(재임용)하지 않는다.

· 외국인

구분	평가기간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최초 재임용	3월~10월(8개월)	150	-	-
이후 재임용	11월~익년10월(12개월)	220	-	-

- 9월 임용자의 평가기간개월수, 평점 : 동일함

② 전항에 의하여 "을"이 재계약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갑"은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기타 조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③ 재계약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의1 (재계약조건 및 절차) ① 계약기간 만료일 4개월전까지의 업적이 영역별 평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교원복무평정표(별지제3-1호) 및 소속 전공 교원들의 의견서(별지제4-1호)를 참작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야 한다.

*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한 영역별 평점기준 (개정 2021.2.1.)

[2021년3월1일부터 신규 임용자]내국인, 외국인

구분	평가기간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최초 재임용	3월~10월(8개월)	170	30	-
이후 재임용	11월~익년10월(12개월)	240	50	-

- 9월 임용자의 평가기간개월수, 평점 : 동일함

- 소속전공이 모집종지가 결정된 경우, 교수업적 평점기준을 충족하여도 재계약(재임용) 하지 않는다.(개정 2021.2.1.)

② 전항에 의하여 "을"이 재계약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갑"은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기타 조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③ 재계약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 (기타사항)

제8조의 1 (의무) ‘갑“과 ”을“의 계약체결에 있어 ”을“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① 학교법인세기학원 정관 및 대구예술대학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8.8)

② 우리 대학교 이외의 보수를 수반하는 타 기관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③ 다른 학교에 출강하고자 할 때 또는 다른 기관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기 기관의 직을 위촉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전공 분야와 관련 대구예술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교육자로서 자질 향상에 부단히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학과(전공)의 학생에 대하여 논문지도, 진로상담 등의 학생지도를 적극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8조의 2 (계약의 성실 이행) 본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상호 존중하여야 하며, “을”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계약을 위반할시에는 임용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① “을”의 교과지도내용이 불충실하여 대구예술대학교의 교육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② 결강, 조퇴, 결근 등이 무상하여 근무질서가 문란하였을 때

③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추락시켜 학교명예를 손상케 하였을 때

④ 학과(전공)의 폐지로 인하여 전공분야의 교과목이 없어진 때

⑤ 고의, 과실을 불문하여 학생들에게 면학분위기 저해 요인을 유발케 하였을 때

⑥ 직무상 또는 직무외에 학교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은 1개월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상호간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 3 (계약 변경 등)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을”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의 4 (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본인은 대구예술대학교 비정년트랙 강의전담 전임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계약서의 모든 조건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이 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본인은 대구예술대학교 교원으로서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 계약서와 대학의 제반 규정에 명시된 근무지침에 따라 교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할 것을 서명,수락합니다.

년 월 일

“갑” 주 소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산 117-6 대구예술대학교

대 표 자

“을”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별지 제2호]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연봉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계약에 따른 연봉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임용직명)

“을”은 대구예술대학교 전공 ()로 임용된다.

2. (연봉계약기간)

“을”의 연봉계약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간)로 한다.

3. (보수)

“을”의 보수는 연봉제로 한다. 연봉액(1년간)은 ₩ 원(₩ 원)(세금공제 전)으로 하며, 매월 ₩ 원(₩ 원)씩 균등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가족수당, 보직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4. (재계약)

계약기간 동안 매년 당해년도 교원 봉급 인상률에 따라 연봉 재계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산 117-6 대구예술대학교

“갑” 대 표 자

“을” 주 소

“을” 주민등록번호

“을” 성 명 (인)

[별지 제2-1호]

비정년트랙 강의전담 전임교원 연봉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 비정년트랙 강의전담 전임교원 임용계약에 따른 연봉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개정 2021.2.1.)

1. (임용직명)

“을”은 대구예술대학교 전공 ()로 임용된다.

2. (연봉계약기간)

“을”의 연봉계약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간)로 한다.

3. (보수)

“을”의 보수는 연봉제로 한다. 연봉액(1년간)은 금 원(W 원)(세금공제 전)으로 하며, 매월 금 원(W 원)씩 균등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가족수당, 보직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4. (재계약)

계약기간 동안 매년 당해년도 교원 봉급 인상률에 따라 연봉 재계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산 117-6 대구예술대학교

“갑” 대 표 자

“을” 주 소

“을” 주민등록번호

“을” 성 명 (인)

비정년트랙전임교원 복무평정표

피평정자	전 공		성 명			
	직 급		최초임용일			
			직전임용일			
평 가 항 목		평 점(해당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책임시수 충족 결과		5	4	3	2	1
학교행사 및 회의 참석 활동		5	4	3	2	1
학생지도 및 상담활동		5	4	3	2	1
직장 이탈 금지		5	4	3	2	1
강의평가 결과		5	4	3	2	1
평정자의 종합의견						
20 년 월 일						
평정자 :			(인)			

* 평정자 : 부총장, 교무처장

* “미흡” 또는 “매우미흡”의 경우 그 근거사유를 명확히 명시할 것.

비정년트랙 강의전담 전임교원 복무평정표

피평정자	전 공		성 명			
	직 급		최초임용일			
			직전임용일			
평 가 항 목		평 점(해당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책임시수 충족 결과		5	4	3	2	1
학교행사 및 회의 참석 활동		5	4	3	2	1
학생지도 및 상담활동		5	4	3	2	1
직장 이탈 금지		5	4	3	2	1
강의평가 결과		5	4	3	2	1
평정자의 종합의견						
20 년 월 일						
평정자 :			(인)			

* 평정자 : 부총장, 교무처장

* “미흡” 또는 “매우미흡”의 경우 그 근거사유를 명확히 명시할 것.

